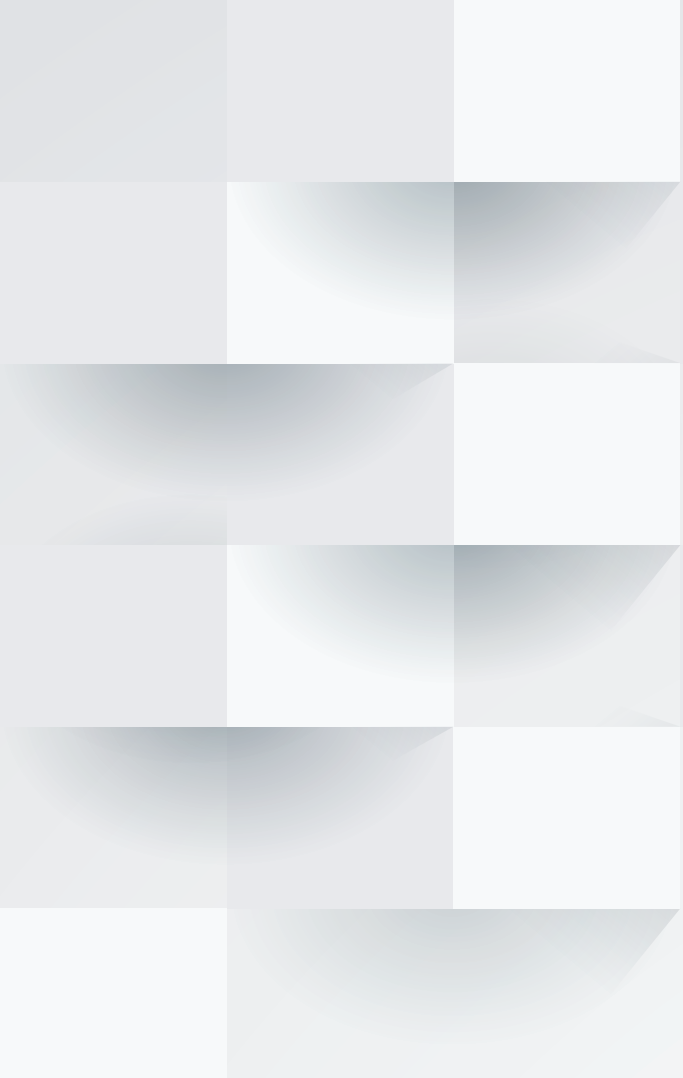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및 선거여론조사의 이해

목차

1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1
Ⅰ. 제1장 목적과 적용 범위	1
Ⅱ. 제2장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 원칙	2
Ⅲ. 제3장 여론조사의 기획	2
Ⅳ. 제4장 취재와 보도	4
Ⅴ. 제5장 언론사의 역할	6
Ⅵ. 부칙	6
2 선거여론조사의 이해	10
Ⅰ. 선거와 여론조사	10
Ⅱ. 선거여론조사기준	11
Ⅲ.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12
Ⅳ. 선거여론조사 실시	17
Ⅴ.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19
Ⅵ.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22
Ⅶ. 선거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상 준수사항	26
별 첨	
◇ 선거여론조사기준	30
◇ 공직선거법	45
◇ 과태료부과기준	54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한국신문협회 · 한국방송협회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정치과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선거에 즈음하여 유권자 등 미디어 이용자에게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다. 여론, 민심, 판세 등 유권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보도함에 있어 이를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언론은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전문적인 여론조사는 선거 기간 중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당시 자격 미달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하면서 수준 낮은 조사가 많았다. 또한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언론의 보도행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언론인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하며,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목적과 적용 범위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선거여론조사의 활용과 보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여론조사보도의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언론의 원활한 공적 기능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준칙은 다음 각 호의 선거에 적용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 선거 및 교육의원선거

②이 준칙은 다음 각 호의 미디어에 적용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문, 인터넷신문
2.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 전광판방송, 종합편성, 전문편성, 유선방송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뉴스통신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2장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 원칙

제3조(여론조사의 한계) 여론조사는 여론을 탐색하는 많은 방법 중의 하나이며, 여론조사의 수치는 여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자료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수치가 곧 여론 그 자체는 아니므로 미디어는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수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4조(과학성) ①여론조사는 과학성이 생명이다. 미디어는 대표성과 신뢰성이 의심되는 여론조사를 기획하거나 의뢰하지 않는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하지 않는다. ②미디어는 표본을 추출하는 표집, 설문문항 구조의 설계, 현장 실사, 컴퓨터를 활용한 통계 분석 등 일련의 조사 분석 과정에서 과학성이 담보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채택하는 여론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③미디어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을 충족한 과학적 해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속보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④미디어는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숫자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제5조(공정성) ①미디어는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어 선거 운동에 오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학적 해석이 동반되지 않는 결과 보도는 선거 과정에 공정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하며, 미디어의 정치적 의도성이 의심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②미디어는 여론조사 결과 중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뽑아 단편적, 단락적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3장 여론조사의 기획

제6조(조사기관의 선정) 미디어는 과학성, 공정성 등의 여론조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전문 조사기관에 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때, 조사목적, 예산의 규모, 조사 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충분히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7조(표본의 대표성 확보) ①미디어가 선거여론조사를 직접 또는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대표성 있는 표집이 아닐 경우에는 표본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③미디어는 응답률이 공표, 보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은지 확인해야 한다.

제8조(금지되는 조사행위) ①「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는 선거여론조사를 기획, 의뢰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②미디어는 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를 기획하거나 의뢰하지 말아야 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산하·연계 조직이 의뢰하거나 비용을 제공하는 여론조사
 2. 조사 대상자의 선택이 조사 기관에 의하여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 즉 과학적 표집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응답자로 참여하는 인터넷 여론조사 또는 ARS 여론조사
 3. 기타 개별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구구성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없는 여론조사

제9조(무리한 속보 경쟁 자제) 미디어는 특정 사건 발생 후 단기간에 과학성, 공정성이 결여된 여론조사를 실시해 무리한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속보 경쟁에 치우쳐 담당 기자에게 무리한 보도나 제작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품질의 제고) ①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미디어는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고품질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저품질 불량 여론조사를 여러 번 하기 보다는 횟수를 줄여 과학성, 공정성을 갖춘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디어 간 경쟁은 자제하고 복수의 미디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②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고 한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③항은 여론조사 보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으로,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유권자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 기준 이상의 충분한 표집 등이 필요하다.

제11조(여론조사의 감리) 미디어는 전문 조사기관이 조사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표본은 확률에 입각해 제대로 추출하는지, 실제조사는 성실히 수행하는지 등을 감리하기 위해 조사 전후에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감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장 취재와 보도

제12조(대상 여론조사) 미디어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해야 한다.

제13조(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①정당과 후보자의 지지율 및 선호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보도는 중앙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참조하여 보도한다. ②정책 및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등과 관련한 여론조사 보도도 이에 준한다.

제14조(인용의 제한) ①중앙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가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인용할 경우 미디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유의하고, 해당하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인용하지 않아야 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산하·연계 조직이 의뢰하여 실시된 경우
 2. 질문의 내용이 응답을 편향되게 몰아가는 경우
 3. 조사 대상자의 선택이 조사 기관에 의하여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 즉 과학적 표집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응답자로 참여하는 인터넷 여론조사 또는 ARS 여론조사
 4. 기타 개별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구구성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없는 여론조사
- ② 타 미디어에서 보도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가 위법하다고 결정되어 인용·공표가 불가하다고 공지되었는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인용시 표기 사항)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이미 보도된 타 기관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할 때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기간 등과 함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밝혀야 한다.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①미디어는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율 또는 선호도는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오차를 감안해 보도해야 한다.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 ③위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위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

제17조(조사 결과의 비교) ①서로 다른 시점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는 그 조사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만 상호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②‘지지율 조사’와 ‘선호도 조사’처럼 성격이 다른 여론조사들을 직접 비교하지 않는다. ③지지율의 상승과 하락

에 대한 표현을 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또는 ‘하락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여론조사 결과의 추세, 최대 표본오차, 표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제18조(항목 무응답의 고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묻는 조사의 경우 ‘무응답자’ 및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미디어는 전체 조사대상자가운데 몇 퍼센트의 응답자가 실제로 응답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전체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특정 문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았거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면, 실제로 조사대상자의 다수는 그 안건을 찬성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제19조(주관적 표현 자제) 조사 결과에 대해 “의외의”, “예상을 넘는”,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주관적일 수 있는 표현은 가급적 자제한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관적인 견해나 판단을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제20조(인포그래픽 제작 주의) ①후보자나 정당 간 지지율 또는 선호도의 차이가 오차한계 내에 있을 경우 그래프, 그림, 표 등은 동등한 크기와 조건으로 제작해야 한다. ②다른 조사와 비교할 경우 그래프, 그림, 표 등을 사용해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제21조(전문 용어에 대한 해설) 미디어는 여론조사 보도 시 신뢰수준, 표본오차, 오차범위, 응답률, 가중값 등 전문용어를 매체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한다.

제22조(순위 일변도 보도 지양) ①미디어는 선거 기간 중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율과 선호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책 및 공약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보도해야 한다. ②여론조사의 주제를 선정할 때도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하위표본 분석의 경우 비율 수치와 함께 하위표본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를 제시해야 한다. 극히 적은 하위표본의 결과치를 비율로 환산해 퍼센트로 제시할 때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5장 언론사의 역할

제24조(지원 준비와 교육) 언론사는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교재를 비치하고 선거보도 종사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교육 참여 독려) 언론사는 사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보도교육 프로그램에 소속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언론사는 가능하면 여론조사 담당 기사를 사전에 지정해 평소 전문지식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제26조(언론사별 준칙 제정) 언론사는 필요할 경우 이 준칙을 토대로 각 사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자체 준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제27조(준칙 준수 의사의 공표)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는 자체 매체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준칙 준수 의사를 밝힌다.

제28조(심의) 이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하는 언론사의 특정 기사나 보도가 준칙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기구별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제재 절차와 방법, 제재 종류 등은 심의기구별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 ① 한국방송협회 회원사, 또는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는다.
- ②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윤리강령준수를 서약한 신문사는 기존의 자체 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과 이 준칙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 ③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와 인터넷신문위원회 서약사는 기존의 자체 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이 준칙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선거여론조사의 이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목차

I. 선거와 여론조사	10
1. 선거여론조사의 의미	10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10
3.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	10
II. 선거여론조사기준	11
1.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의미	11
2.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적용대상 등	11
III.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12
1. 신고대상	12
2. 신고의무자	13
3. 신고기한	14
4. 신고방법	14
5. 신고처	14
6. 신고사항	15
7.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보완	16
IV. 선거여론조사 실시	17
1. 일반적 준수사항	17
2. 질문지 작성 시 준수사항	17
3.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18

V.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19
1. 등록 대상 여론조사	19
2. 등록의무자	20
3. 등록사항	20
4. 최초 공표 · 보도예정일시의 통보	21
VI.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 보도	22
1.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 · 보도 시 함께 공표 · 보도하여야 할 사항	22
2.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등 구분 공표 · 보도	23
3. 선거여론조사결과 인용 공표 · 보도 시 함께 공표 보도 할 사항	23
4.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 · 보도 시 준수사항	23
5.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 보도 금지	25
VII. 선거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상 준수사항	26
1. 선거여론조사 실시(공표 · 보도 목적 불문)	26
2. 선거여론조사 실시 시기별 유의사항	26
3. 선거여론조사결과 홈페이지 사전 등록	27
4.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 보도 유의사항	27
5. 선거여론조사 자료 보관 및 제출	28
■ 별 첨	
◇ 선거여론조사기준	30
◇ 공직선거법	45
◇ 과태료부과기준	54

I. 선거와 여론조사

1. 선거여론조사의 의의

- 민주국가에서 여론이란 국민이 그들에게 공통되고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표명하는 의견의 집합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표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
- 여론조사는 이를 통하여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정치인이나 정당으로 하여금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긍정적인 기능이 있으나,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기능도 갖고 있음.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공표·보도에 관한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의 확립을 위하여 선거관련 여론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보도 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제정권을 부여하였음.

Ⅱ. 선거여론조사기준

1.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의미

- “선거여론조사기준”이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함)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을 말함.
- 누구든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등록 또는 공표·보도할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적용대상 등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와 다른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에 적용됨.
- 별도의 제정이나 개정이 없으면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함.

Ⅲ.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1. 신고대상

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기에 관계없이 신고

- ① 법 제108조제3항 각호에 따른 비신고 대상 이외의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당선인 예상 및 정당 지지도·호감도 여론조사
- ② 법 제108조제3항 각호에 따른 비신고 대상 이외의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후보단일화 및 후보자 인지도 여론조사
- ③ 노동조합 등 단체가 지지·반대할 정당 또는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

※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로써 당해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말함.(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함.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선거여론조사로 볼 수 없어 신고 및 홈페이지 등록대상에서 제외

① 전문가에 의한 학술·연구목적의 여론조사

※ 다만, 학술·연구목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등 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에 해당

② 당대표 등 당직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③ 국회의원의 순수한 입법활동 등을 위한 정책 여론조사

※ 다만,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가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시기·경위·목적, 조사결과의 구체적 활용용도, 공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에 해당

2. 신고의무자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의무가 없음.

①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 제3자(후보자 등)가 여론조사기관·단체에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이 신고

※ 다만,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신고

②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③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④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급지역에 따라 결정함.

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⑥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⑦ 위 ③~⑥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관리·운영”이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함.

⑧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2016년도 대상 인터넷언론사(2016. 2. 1. ~ 2017. 1. 31.)

네이버, 네이트, OSEN, 마이데일리, 다음, 줌, 뉴스엔, TV리포트

3. 신고기한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 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

4. 신고방법 : 서면(규칙 별지 제33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함.

5. 신고처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함.

- ①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
- ②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 또는 하나의 시·도 안에서 2 이상 자치구·시·군(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함)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지도과)
- ③ 하나의 자치구·시·군(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함)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지도홍보계)

6. 신고사항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할 때에는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에 아래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 ①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 ② 조사기관·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③ 조사목적
- ④ 조사방법 등(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조사일시,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방법,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 여부)

⑤ 전체 설문내용(표적집단 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제 등을 말함)

나. 조사목적 :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 기재

다. 조사지역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 기재

라. 조사일시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하며,
조사지역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 기재

마. 조사방법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아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에는 그 방법을 모두 기재

① 직접(대인)면접조사

②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

③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
으로 구분)

④ 우편조사

⑤ 표적집단 면접조사

⑥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based-survey)조사 등으로 구분]

⑦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⑧ 그 밖의 조사방법

바. 표본의 크기

해당 선거여론조사 목표 표본의 크기 기재

사. 피조사자 선정방법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전화면접조사·전화자동응답(ARS)조사 및 패널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야 함.

- ① 전화면접조사·전화자동응답(ARS)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선과 무선 전화를 병행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함.
- ② 패널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패널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함.

아.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의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칸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함.

- ①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 여부
- ②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정지역 또는 유권자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되는 그 지역 또는 유권자 집단

7.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보완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사항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보완해야 함.
-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래의 구분에 따른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하여야 함.
 - ① 중앙심의위원회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② 관할 시·도심의위원회 :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IV. 선거여론조사 실시

1. 일반적 준수사항

-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이 경우 과도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됨.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 질문지 작성 시 준수사항

가.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함. 이하 이 장에서 같음)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됨.

- ①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 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③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
- ④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 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 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나.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도 포함되도록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야 함.

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의 질문지에서 질문 항목마다 순환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지에서는 질문 항목마다 동일한 순위로 하되 각 질문지별로 순위를 달리하여 순환시키라는 것임.

라.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됨. 이 경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법 제60조의2제1항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주요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하여야 함.

3.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함.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거나 조사대상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V.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1. 등록 대상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로서 공표·보도하려는 선거여론조사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비등록 대상임.

① 선거여론조사이나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경우

- 정당이 당내경선결과 발표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장소 등에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 다만, 당내경선 여론조사결과를 별도로 대외적으로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지지도 여론조사, 정당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 등을 공표·보도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여론조사에 해당

② 선거여론조사로 볼 수 없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경우

- 전문가에 의한 학술·연구목적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경우

※ 다만, 학술·연구목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등 선거에서 활용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되어,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등록의무 여론조사에 해당됨.

- 당대표 등 당직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경우

- 국회의원의 순수한 입법활동 등 정책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경우

※ 다만,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가 하더라도 여론조사의 시기·경위·목적, 조사결과의 구체적 활용 용도, 공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되어,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등록의무 여론조사에 해당

2. 등록의무자 : 여론조사를 실시한(실제 수행한) 기관·단체

3. 등록사항

가. 여론조사 등록시 유의사항

선거여론조사를 등록한다는 것은 공표·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최소 표본수(조사완료 사례수)

- 대통령선거[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함)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함] 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 광역단체장선거(세종특별시장선거 제외, 2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함) 또는 시·도단위 조사 : 800명
- 세종특별시장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단위 조사 : 500명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조사 : 300명

② 가중값 배율 범위

- 성 별 : 0.4~2.5
- 연령대별 : 0.4~2.5
- 지 역 별 : 0.4~2.5

※ 가중값 배율 준수는 기준 「별지 제2호서식」에서의 준수를 의미함.

나. 여론조사 등록사항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한 아래의 사항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함.

- ①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 ② 조사의뢰자
- ③ 조사기관·단체명
- ④ 조사지역
- ⑤ 조사일시
- ⑥ 조사대상
- ⑦ 조사방법
- ⑧ 표본의 크기(성별·연령대별 표본의 크기 포함)
- ⑨ 피조사자 선정방법
- ⑩ 피조사자 접촉 현황
- ⑪ 응답률
- ⑫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⑬ 표본오차
- ⑭ 전체 질문지
- ⑮ 결과분석
- ⑯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4.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의 통보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VI.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1.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 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가. 공표·보도의 의미

- ①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 ②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시
 - ③ 기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기사화될 것을 예상하여 기자와 나눈 대화 등

나. 함께 공표·보도 사항

누구든지(방송, 신문, 입후보예정자, 일반인 등)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규정 사항

- ① 조사의뢰자
- ② 조사기관·단체명
- ③ 조사지역
- ④ 조사일시
- ⑤ 조사대상
- ⑥ 조사방법
- ⑦ 표본의 크기
-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 ⑨ 응답률
- ⑩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⑪ 표본오차
- ⑫ 질문내용

2.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등 구분 공표·보도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보정하여 이를 등록하고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그 결과분석(후보자 지지율 등)자료를 구분하여 공표·보도하여야 함.

3. 선거여론조사결과 인용 공표·보도 시 함께 공표·보도 할 사항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 ① 해당 선거여론조사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보도일자 등)
⇒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일시”로 개정 의결하였으며,
추후 관보 고시와 함께 시행될 예정임.
- ②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

4.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가. 조사지역

해당 선거여론조사 실시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함께 공표·보도

나. 조사일시

해당 선거여론조사 실시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함께 공표·보도

※ 조사지역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함께 공표·보도

다. 조사방법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때 사용한 아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함께 공표·보도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에는 그 방법을 모두 함께 공표·보도

- ① 직접(대인)면접조사
- ②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
- ③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
- ④ 우편조사
- ⑤ 표적집단 면접조사
- ⑥ 인터넷조사 [전자우편조사, 웹(web-based-survey)]
- ⑦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 ⑧ 그 밖의 조사방법

라. 표본의 크기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

※ 표본의 크기는 가중치 보정 전의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실제 응답 완료자의 수를 말함.

마. 피조사자 선정방법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함께 공표·보도하되, 전화면접조사·전화자동응답(ARS)조사 및 패널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야 함.

- ① 전화면접조사·전화자동응답(ARS)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유선과 무선 전화를 병행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피조사자 선정 방법을 함께 공표·보도
- ② 패널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패널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함께 공표·보도

5.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최초의 공표·보도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 포함)할 때에는 중앙심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하여야 하며,
-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음.

※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음.

Ⅶ. 선거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상 준수사항

1. 선거여론조사 실시(공표·보도 목적 불문)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방법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음.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나. 여론조사 실시 시간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 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2. 선거여론조사 실시 시기별 유의사항

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보자 명의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다만,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할 수 있음.

나.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다만,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일간신문사는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

⇒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기간과 대상에 대해 개정 예정임.

3. 선거여론조사결과 홈페이지 사전 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이 경우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4.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유의사항

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미등록자료 공표·보도금지

나.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보도 관련 선거여론조사기준 준수

다. 함께 공표·보도사항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라.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5. 선거여론조사 자료 보관 및 제출

가. 선거여론조사 자료 보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 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함.

나. 선거여론조사 자료 제출의무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
-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

-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때
-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가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 2014. 3. 25.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제2014-1호

개정 2015. 12. 24.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제2015-1호(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뢰자”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한다)의 실시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2. “표본의 크기”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를 말한다. 다만, 사전 신고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말한다.
3. “피조사자 선정방법”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4. “표본오차”란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때 얻게 될 결과의 차이로서 선거여론조사에 적용된 표본추출 및 추정 방법에 따른 95%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오차의 한계를 말한다.
5. “응답률”이란 응답이 완료된 조사단위의 수를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사용된 전체 응답 적격 대상자 수로 나눈 값인 설문 응답의 협조율을 말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은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며, I는 응답 완료된 사례수, R은 거절 및 중도이탈 사례수를 말한다.

$$\text{응답률(\%)} = \frac{I}{I + R} \times 100$$

6. “피조사자 접촉 현황”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접촉 현황을 비적격 사례수(결번, 사업체번호, 팩스번호, 대상지역 아님, 비적격자, 할당 초과 등을 말한다), 접촉 실패 사례수(통화중, 부재중, 접촉 안 됨 등을 말한다),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

수 등 4개 범주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접촉 현황을 정리한 것을 말한다.

7. “전체 설문내용” 또는 “전체 질문지”란 인사말과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는 내용, 질문내용과 보기항목을 포함하는 설문지 전체를 말한다.
8. “결과분석”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응답자 특성 현황, 설문 항목별 응답결과값 및 교차분석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별도의 제정이나 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선거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직선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 선거 및 교육의원선거

제2장 일반기준

제4조(신뢰성과 객관성) ①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도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표본의 크기가 다음 각 호의 수보다 작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선거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 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명
2. 광역단체장선거(세종특별시장선거를 제외하며, 2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 또는 시·도 단위 조사 : 800명
3. 세종특별시장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 : 500명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 300명

- ④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가중값 배율)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연령대의 구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되, 군지역의 경우 30대 이하를 하나의 연령대로 할 수 있다),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밝혀야 하며, 가중값 배율이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성별 : 0.4~2.5
- 2. 연령대별 : 0.4~2.5
- 3. 지역별 : 0.4~2.5

제6조(질문지의 작성 등) ①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 2.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 3.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을 홍보하는 내용
 -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
 -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 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도 포함되도록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예비 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법 제60조의2제1항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주요 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제7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거나 조사대상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세 부 기 준

제1절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8조(신고사항) ① 법 제10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선거여론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칸에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3. 조사목적
4. 조사방법 등(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 방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여부)
5. 전체 설문내용(표적집단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제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특정 지역 또는 유권자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또는 집단이 무엇인지를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목적, 조사지역 및 조사일시 신고) ① 조사목적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지역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일시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지역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방법 신고) 조사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는 그 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접(대인)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으로 구분한다]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제11조(표본의 크기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 신고) ① 표본의 크기에는 해당 선거 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 선정방법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 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호·제3호에 따른 조사 및 패널을 활용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0조제2호·제3호에 따른 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전화 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선과 무선 전화를 병행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패널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패널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제12조(등록사항)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제9호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15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2. 조사의뢰자
3. 조사기관·단체명
4. 조사지역
5. 조사일시
6. 조사대상
7. 조사방법

8. 표본의 크기(성별·연령대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9. 피조사자 선정방법
10. 피조사자 접촉 현황
11. 응답률
12.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13. 표본오차
14. 전체 질문지
15. 결과분석
16.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제13조(등록방법) 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제12조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표본의 크기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 표본의 크기와 함께 성별, 연령대별 및 지역별로 표본의 크기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나누어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표·보도 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되 해당 설문지 및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나누어 등록할 수 있다.

제14조(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등의 등록) 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을 등록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과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제1항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외에 과거 선거 투표율 보정, 과거 선거 후보자 득표율 보정, 응답유보층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이에 사용된 기준 정보의 출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결과를 보정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과분석 자료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자료 대외 공개)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항 중 제1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의 사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지정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 공개하고, 제1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은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48시간을 말한다) 이후에 공개한다. 이 경우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공표·보도된 경우에는 그 공표·보도된 때를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 본다.

② 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공표·보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으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3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제17조(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최초의 공표·보도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

제18조(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단체명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
9. 응답률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② 제14조에 따라 구분 등록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그 결과분석(후보자 지지율 등) 자료를 구분하여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보도일자 등)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

제19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 또는 “등록”은 “함께 공표 또는 보도”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20조(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결정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법 제108조 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매년 1월 중 결정하여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법 제10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급지역에 따른다.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방법(구성비)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대상					
	표본 추출					
	표본 추출방법					
	기타					

- 주. 1. 조사방법은 제10조에 규정한 당해 여론조사에 사용한 모든 조사방법(유·무선 전화 면접, 유·무선 ARS, 스마트폰앱, 인터넷 등)과 각 조사방법별 사용한 구성비(유선 전화면접 00%, 무선전화면접 00%) 등을 기재합니다.
2. 조사대상은 전체 조사대상을 기재하되 조사방법이 두 개 이상 혼합조사인 경우 각 조사방법별로 조사대상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조사방법별로 연령대를 다르게 적용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각 조사방법별 표본의 연령대(ex, 유선전화 면접→ 유권자 40대 이상, 무선전화면접→ 유권자 19세에서 40대 미만) 등을 기재합니다.
3. 표본추출틀은 해당 조사대상 선거구에서 사용한 표본추출틀, 즉 전체 유권자 대상 무작위전화걸기(RDD), 유선전화DB(KT DB, 하나로 DB 등), 무선전화 DB(구매 DB 또는 자체 보유 DB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스마트폰앱패널(전체 규모와 구축 방법), 기타 표본추출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표본추출 방법은 “성·연령·지역 기준 할당 후 무작위추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5. 기타는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6. 이 서식은 홈페이지 입력방식에 따라 등록(입력)하여야 합니다.

결과분석 자료

I. 응답자 특성

구 분		조사 완료		목표 할당		가중값 배율 (B/A)	비 고
		사례수(명) (A)	비율(%)	사례수(명) (B)	비율(%)		
전체							
성별	남자 여자						
연령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지역별	○○시 □□군 △△군 ▣▣구						

- 주 : 1. 지역별을 선거구 또는 권역별로 기재한 경우 행정구역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2. 각 항목별 %의 전체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3. 조사 완료 사례수는 실제 조사한 표본의 크기를, 목표 할당 사례수는 조사목표 표본의 크기를 말합니다.
 4. 성별·연령별·지역별 이외 항목은 필요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군지역(광역시 소재 제외)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20~30대(만 19세 포함)를 통합할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II. 설문 항목별 응답결과값

1. 선생님께서는 다음 인물들 가운데 차기 국회의원으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 ① A후보(%) ② B후보(%) ③ C후보(%)
- ④ D후보(%) ⑤ 지지하는 후보 없음(%)
- ⑥ 모름/무응답(%)

2.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계십니까?

- ① 갑정당(%) ② 을정당(%) ③ 병정당(%)
- ④ 기타 정당(%) ⑤ 지지정당 없음(%)
- ⑥ 모름/무응답(%)

3. 가상대결 : A후보 VS B후보

- ① A후보(%) ② B후보(%)
- ③ 지지하는 후보 없음(%)

주 : 1. 공표·보도되는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지지율은 가중 조정된 후 비율을 기재합니다.

Ⅲ. 교차분석표(예시)

※ 아래 내용 등이 공표·보도된 경우에만 해당 교차분석표를 함께 등록합니다.
 ※ 사례수를 기재할 경우 조사 완료 사례수가 기준입니다.

1. 후보 지지도

구 분		조사 완료 사례수	A 후보	B 후보	C 후보	지지후보 없음	목표 할당 사례수
전 체							
성별	남자 여자						
연령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지역별	○○시 □□군 △△군 ▣▣구						

2. 가상대결 : A후보 VS B후보

구 분		조사 완료 사례수	A후보	B후보	지지후보 없음	목표 할당 사례수
전 체						
성별	남자 여자					
연령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지역별	○○시 □□군 △△군 ▣▣구					

3. 당선희망 정당 후보

구 분		조사 완료 사례수	A정당 후보	B정당 후보	지지후보 없음	목표 할당 사례수
전 체						
성별	남자 여자					
연령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지역별	○○시 □□군 △△군 ▣▣▣▣구					

- 주 : 1. 성별·연령별·지역별 이외 항목은 필요시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목표 할당 사례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군지역(광역시 소재 제외)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20~30대(만 19세 포함)를
통합할 경우 교차분석표에서도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2016. 3. 3. 법률 제14073호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2항 후단¹⁾을 준용한다.
- ③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

1)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⑧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⑨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⑪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⑫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생략)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체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 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⑩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⑫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④ (생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8제7항제3호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 정당 외의 자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5호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를 밝힌 이용자의 안심번호를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를 위반하여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2. 제57조의8제9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심번호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 제57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안심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4. (생략)
5.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타. (생략)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하. ~ 너. (생략)

2. ~ 4. (생략)

④ ~ ⑤ (생략)

제260조(양벌규정) ① 정당·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

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1조, 제232조제1항·제2항, 제235조, 제237조제1항·제5항, 제240조제1항, 제241조제1항, 제244조, 제245조제2항, 제246조제2항, 제247조제1항, 제248조제1항,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56조,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8조, 제25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단체등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3조, 제234조, 제237조제3항·제6항, 제242조제1항·제2항, 제243조제1항, 제245조제1항, 제246조제1항, 제249조제1항, 제255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8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자
3. 제108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여론조사 의뢰자를 말한다.

4. 제108조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④ ~ ⑪ (생략)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② ~ ③ (생략)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만원)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 상한액	부과기준
2.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 통보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법 제261조제2 항·법 제8조의 8제9	3,000	가.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 통보를 받고 정해 진 기한까지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 : 1,500 나.이행기간을 초과하는 때 1일마다 가산액 : 100
2의2.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에 등록하지 않는 행위(여론조사 의뢰자로 부터 공표·보도 예정일 시를 통보 받고도 중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회 홈페이지에 등록하 지 않거나, 여론조사 의 뢰자가 여론조사를 실 시한 기관·단체에 공표· 보도 예정일시를 통보 하지 않는 행위 포함)	○ 법 제261조제2 항·법 제108조 제7항	3,000	가.제108조제7항 전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 거나, 같은 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고도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때 : 1,500 나.과태료부과 통지를 받고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1일마다 가산액 : 100 다.제108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 : 1,500
2의3. 선거여론조사기준으 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 니하거나,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 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 하는 행위	○ 법 제261조제2 항·법 제108조 제6항·법 제 108조제8항	3,000	가.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 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때 : 1,500 나.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 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때 : 3,000 다.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 시하였으나 공표 또는 보 도는 하지 않은 경우 : 1,000